

NOV 2022. Issue 168

#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Where Is Grace Chang?**

03 ... 하루살이

 **The New Customs Study**

06 ... 현장확인과 보는 눈의 차이

 **최신 관세 판례 분석**

11 ...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보아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여 한 관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37)

 **논리로 푸는 HS 사례**

15 ... EMI Filter의 품목분류 변경고시

 **Global Customs Insight**

19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이전가격에 대한 OECD 지침 소개 - 2.  
코로나-19 특정비용의 할당과 손실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22 ...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른 WTO 양허관세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27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하루살이

“  
 우리 모두 내일을 꿈꾸며  
 기다리지만 오늘의 발걸음을 모아야  
 내일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하루살이는 곤충강 하루살이목에 속하는 곤충을 아울러 부르는 말입니다. 그 목명의 뜻은 하루동안 사는 날개(wing lasting for a day)라고 합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아름다운 날개로 훨훨 날아오르며 열심히 살다 죽음을 맞이하는 작은 곤충의 일생은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루살이의 일생을 보면 유충의 시기와 성충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루살이는 성충의 시기를 지내고 있으며 이는 몇 시간에서 길면 일주일 정도입니다. 한편 인간의 눈에 보이지 이전인 유충의 시기에 1 년내지 2 년은 물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랜 준비기간을 갖고 나오지만 아름다운 날개로 세상에서 날아다니는 시간은 하루정도 뿐인 것이지요.

이번 달 *The New Customs Study*는 '현장확인'과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은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보아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여 한 관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37)'이며, 논리로 푸는 HS 사례는 'EMI Filter의 품목분류 변경고시'입니다. 또한 *Global Customs Insight*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이전가격에 대한 OECD 지침 소개 - 2. 코로나-19 특정비용의 할당과 손실'이며, FTA 수출입 실무 안내는 'TA(정보기술협정)에 따른 WTO 양허관세',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입니다.

인간을 하루살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사는 사람 혹은 힘겹게 겨우겨우 사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하지요. 아주 짧은 기간동안 지속된 생활이나 목숨, 정권 따위를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부정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내일이나 미래를 예측 불가능한 암흑 상태로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삶까지도 암울하게 부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하루씩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어느 누구도 하루가 아닌 이틀을 혹은 한달, 한 해를 한꺼번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해가 저야 내일의 해가 떠오릅니다. **우리 모두 내일을 꿈꾸며 기다리지만 오늘의 발걸음을 모아야 내일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 등을 운영하는 복지재단 꽃동네는 한 걸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귀동 씨는 일제강점기에 징용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며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고향에 돌아왔으나 살던 집은 사라졌고 가족도 흩어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든 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그는 자살을 결심하고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거동조차 할 수 없이 누워있는 걸인들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걸을 수가 있군요. 우리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배고픈 우리를 위해 밥을 좀 얻어다 주시오.”

그로부터 30여년 최귀동 씨는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남은 밥 있으면 줘.” 인근 마을 집집을 돌며 밥을 모아왔고 누워있는 걸인들에게 먹였습니다. 돌보던 이들이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자신도 병자였으나 오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갔습니다.** 성당 앞을 지나가는 최귀동 씨를 보게 된 신부도 깨달았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남들을 위해 걸어가는 매일의 헌신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물속에서의 유충시기를 벗어나 세상으로 날아오른 하루살이는 번식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기능이 퇴화되어 먹이섭취가 불가능한 입으로 겨우 수분섭취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해야 할 헌신은 적극적인 번식 활동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하루의 과제입니다. **내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만 겨우 마시면서 번식이라는 과제에 충실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하루살이의 삶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남겨 줍니다. 나의 삶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을까요? 내일을 바라보기 전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살펴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전에 남의 필요가 깨달어지는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매일의 삶이 쌓이면서 일생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이 간절히 바라던 하루이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보람있게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 오르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꽃동네유지재단 [꽃동네 \(kkot.or.kr\)](http://kkot.or.kr)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The New Customs Study*

# 현장확인과 보는 눈의 차이

현장확인과 사람의 눈과 인식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이야기

**같은 공간에서도 서로 보는 것에 차이가 있다**

요즘 인기 TV프로그램에서는 청춘 남녀들이 상대방의 같은 말에 호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크게 실망을 하기도 한다. 대화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의 의사가 표출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이 전달되므로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서 영 진

전무이사/관세사  
Wedin8@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사람의 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건물에 들어 갔을 때, 어떤 사람은 안에서 바깥 경관을 보고, 어떤 사람은 건물 내부를 본다. 같은 커피숍에 앉아서도 안을 보는 사람과 밖을 보는 사람과 같이 동일한 공간에서도 서로 보는 시선에 차이가 있다.

눈은 외부의 빛이나 형태, 색깔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고, 스스로 무언가를 내뿜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토라인에 선 사람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따라서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해서 스스로 선한 눈빛을 가지고 있다고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다.

시선을 던지다, 눈으로 위협하다, 눈이 튀어나온다. 눈이 빛난다, 눈빛 등으로 마치 눈에서 무언가 뿜어져 나오는 양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눈을 천으로 가리면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상황이나 정서를 해석하고 그 해석을 전제로 타인의 눈에 의식이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

결국 사람이 동일한 공간에서 보는 것은 같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받아들이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특이한 사례이다.

**기업매각대금을 받지 못해 청산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

지금으로부터 6년전 중국 천진시에 진출한 우리 제조기업이 중국기업에 현지제조법인을 매각하고 대금입금이 완료되면 해외법인 청산신고를 할 계획이었다.

당시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 투자원금과 과실을 직접 국내로 회수하고 외국환은행에 청산신고를 해야 하는데, 매각대금 잔금이 회수되지 않아 청산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2016년에는 한국의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에서 건당 미 회수 잔액이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회수의무가 있고, 일정한 기간내에 회수가 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 단서 조항에서는 위반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가액의 3배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어서 외화채권 미회수에 대해서 강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다.

당시 미회수금액은 10억원이었는데 한국본사는 매각대금 회수를 위해서 직접 현지법인과 중국매수기업 간 회의를 여러 차례하고 현지법인대표에게 지시하여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물론 외국환거래법 채권회수명령을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었다. 채권 미회수에 대한 처벌은 기업이 처한 딱한 사정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회수되지 못하는 상태가 1년6개월이상 지속되면 그 자체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불법행위를 범하는 상황이었다

한국본사는 자체적인 해결이 계속 지연되자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도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관세사와 변호사가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요청하였다.

먼저 법률검토를 한 결과 당시 외국환거래법으로는 사정을 어떻게 설명해도 처벌을 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고, 오로지 중국매수기업을 설득해서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중국으로 관세사와 변호사가 출장하여 회수를 위한 협상을 하기로 하고, 중국 천진의 호텔회의장에서 중국매수기업과 협상을 3일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점심만 먹고 장시간 협의하였다. 하지만, 중국매수기업의 대표는 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고 오로지 포기하겠다고 하면 확인서는 써 줄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만 하였다.

중국법원은 자국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상황이었다. 마지막날 오전 협상까지 아무 진전이 없었다.

### **공장은 한번 보고가야 되겠다고 마음먹다**

출장을 마무리하는 날까지 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중국매수기업의 답변을 받고, 채권회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상인과 거래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제조공장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고 가고 싶었다.

중국현지법인의 제조공장은 1만5천평의 부지에 건물 2개동을 가진 아주 큰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는 곳 이었는데, 위치는 2015년 8월 화학물질 폭발사고로 85명의 사망자와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은 중국 천진 시 빈하이 신구의 항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화학물질 폭발현장이라 아직은 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중국매수기업의 설명이 있었다.



당시 공장은 유리창이 모두 파손된 곳이고, 화학물질의 폭발의 흔적이 있기에 현장 방문하는 것이 꺼려 지기도 했지만 머리속으로 그려지는 것과 실제 모습은 분명 다를 것이라는 생각에 안전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가기로 했다.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

중국매수기업은 제조공장의 폭발로 건물과 유리창 파손에 대한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추가로 공장을 수리해야 하니 사고현장을 보고 나서 잔금을 포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하지만, 반전은 필자의 눈에는 제조기업이 남긴 제조설비는 이미 매각해서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토지와 건물 내부에는 천진항으로 수입된 렉서스, 벤츠, BMW 등의 고급차의 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졌다. 원래 제조공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도 영리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이었다.

중국출장시에 호텔에서 본사에서 파견한 현지법인장은 3일내내 배석을 하였는데, 중국매수기업에서 제조설비를 매각했다는 사실과 수입자동차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설명을 하지 않았다.

### **현장확인에 대한 다른 눈을 가지니 문제가 해결된다.**

사람이 동일한 공간에서 보는 것이 같더라도 상황을 받아들이는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끔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다.

필자의 눈에는 제조설비를 매각하고, 수입자동차를 보관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고, 중국매수기업의 눈에는 화학물질에 파손된 유리창과 건물의 모습이 보였다. 중국은 토지가 국가 소유이고, 용도에 따라서 국가가 걷는 임대료가 차이가 난다는 예전 기억이 머리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만약 첨단제품 제조기업인 경우에는 평당 월 1천원의 임대료가 청구되는데, 다른 일반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료가 10배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협의를 해서 잔금지불을 하지 않으면 중국법원에 소송을 걸겠다는 메일을 보냈다. 이제 잔금 10억원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중국매수기업을 설득할 필요도 없었다. 지방정부와 관계를 이용해서 제조공장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는데,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알게 되어 낮은 임대료를 더 이상 적용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측은 적중해서 메일을 보낸 뒤 하루만에 잔금을 보내겠다는 연락이 왔다. 계좌번호를 보내니 바로 외화가 입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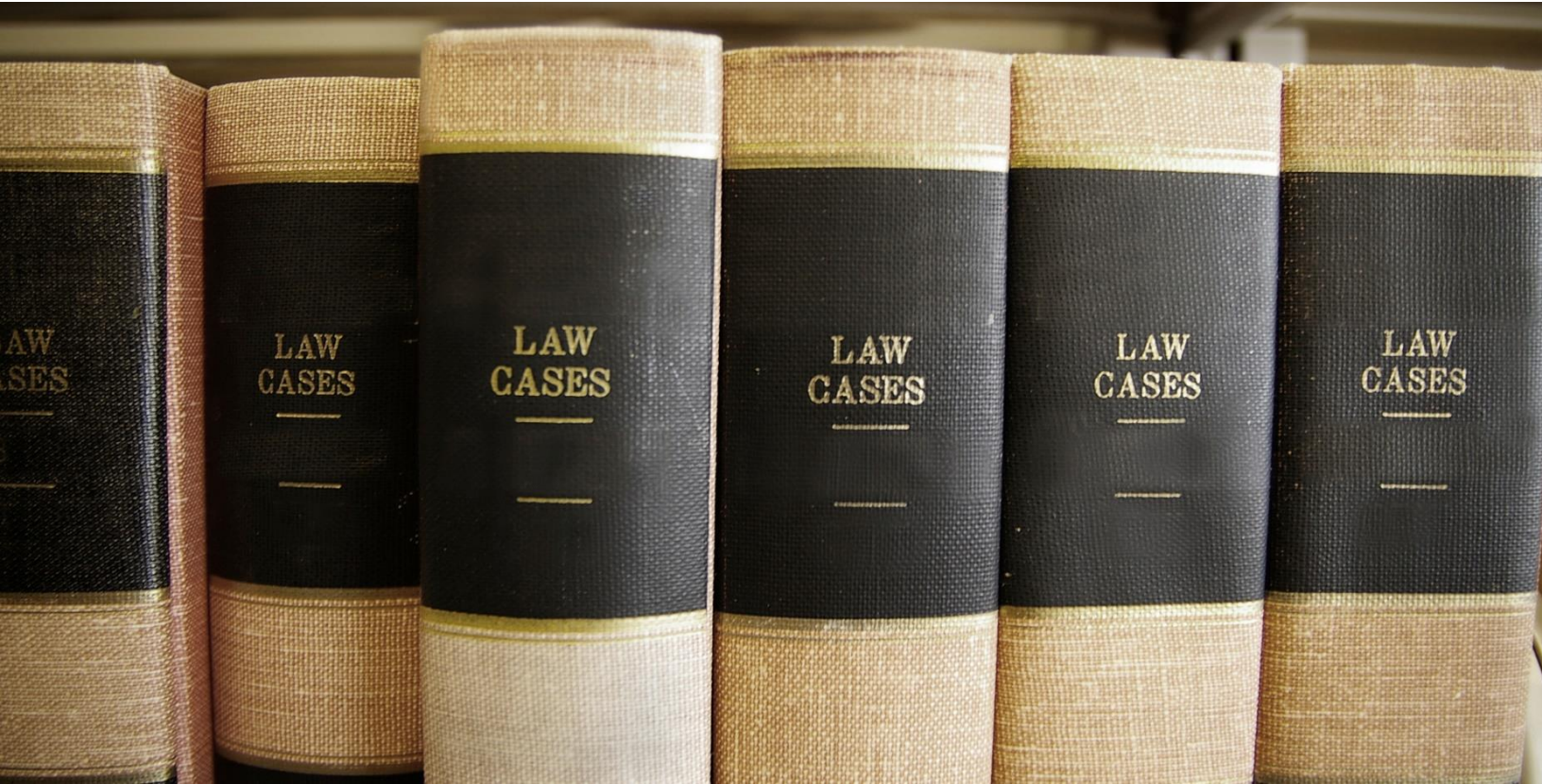
**보는 눈이 다른 사람과 살고 있고, 현장을 가보는 것이 항상 필요하다.**

머리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르고, 보는 사람마다 본 것이 다르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같은 현장이라도 다시 가보는 것이 필요하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속담과 현장에 답이 있다고 이야기를 자주 한다. 하지만 현장을 가야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종전의 경험에 의존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을 살피고, 현장에 가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합쳐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제조공장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대금을 회수할 것이며, 외국환거래법의 처벌을 어떻게 면할 수 있었을까? 항상 현장에서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찾는 노력을 하도록 주변에 권해 본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

#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보아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여 한 관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37]

##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7.12.15.부터 2021.6.25.까지 OO 소재 AAA(이하 "수출자①"이라 한다)로부터 리프트[LIFT (모델명: OO,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를, OO 소재 BBB(이하 "수출자②"라 하고, 수출자①과 수출자②를 합하여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기타 리프트[OTHER LIFTING MACHINERY(모델명: OO,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각각 수입하면서, 수입 신고번호 OO 등 OO건을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 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28.10-1000호 내지 HSK 제8428.90-9000호(WTO양허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습니다.



조원희

관세사

whcho@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검역/요건

- 청구법인은 2020.4.29.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에 쟁점①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분류원은 2020.7.24. 청구법인에게 HSK 제8479.89-9099호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0.8.19. 분류원에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을 하였으나, 분류원은 2021.3.23. 쟁점①물품의 품목번호를 이전과 동일하게 HSK 제8479.89-9099호로 결정하여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8.2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에 대해 보정·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보정·수정신고하지 않자 2021.10.18. 청구법인에게 관세 00원, 부가가치세 00원, 가산세 00원, 합계 00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습니다.

## 2. 판단

### (1) 청구인 주장

- 쟁점물품은 가구 등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제9402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합니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 한다)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가구 및 가구 등에 전용되는 부분품'을 호의 용어로 하고 있는 관세율표 제9402호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쟁점물품은 제8479호의 용어에서 규정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세율표 제8479호에 대한 해설서에서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을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잡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춘 기계 (i)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잡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ii)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구나 복잡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과용 의자류는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 가구의 정의와 관련하여 가동성의 물품으로써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서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류에 있어서의 가구는 지면에 볼트 등으로 고정시키도록 만들어졌을지라도 가동성의 가구로 간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표 제9402호의 의료용 가구류·기계식 기능을 갖춘 의자가 제 9401호의 의자와 그 부분품 및 제9403호의 그 밖의 가구류와는 구분하여 용도와 기능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결합되는 안과용 가구류의 기능은 일반의자 및 일반 가구류의 기능과 달리 '진료를 목적으로 한 특정 기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쟁점물품이 결합될 안과용 가구류는 안과 진료를 목적으로 하므로 환자 및 진료기기의 정확한 '상하 조절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안과용 가구류에 결합될 쟁점물품은 이러한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i) 결합될 기기와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ii) 쟁점물품은 안과용 의자의 '상하 조절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므로 관세율표 제8479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2) 처분청 주장

- 쟁점물품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계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쟁점물품은 각종 목적물의 지지부를 구성하는 동시에 자체의 길이를 펼쳤다 꺾치게 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상부에 장착된 목적물의 높낮이를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조절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의 이러한 기능은 목적물을 결합하지 않은 쟁점물품 자체만으로도 수행될 수 있으므로 다른 기기와 독립하여 작용되는 고유한 기능에 해당합니다. 또한 설령 쟁점물품이 목적물과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목적물의 기능과는 별개로 높낮이 조절 기능을 수행하므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로 봄이 타당합니다.

- 품목번호는 수입신고 시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수입 후 사용하고자 하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는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물품의 성질과 그 때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분류되어야 합니다. 제9402호 해설서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형의 가구에 한정하여 제9402호로 적용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갖지 않는 범용성의 가구는 제9402호에서 제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 이 호의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경우 그 부분품을 제9402호로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높낮이 조절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가능한 점이 확인되므로 수입신고 시 쟁점물품의 용도를 안과용 가구의 부분품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물품을 사용자가 원하는 사양에 따라 제작하여 수입 후에 사용자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 한다면, 쟁점물품이 단지 최대로 펼쳐지는 높이, 지지할 수 있는 하중, 상하 조절 속도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 3. 결론

쟁점물품은 목적물에 장착되어 상하 움직임을 통해 목적물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동 형상의 물품으로 목적물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하여 의료·인체공학 분야, 가전제품 부착 설비 등 수직 이동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점, 각종 목적물의 지지부를 구성하는 동시에 자체의 길이를 펼쳤다 겹치게 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상부에 장착된 목적물의 높낮이를 사용자 환경에 맞게 조절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다른 기기와 독립하여 작용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402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4. 시사점

위 사례에서는 호의 용어와 해설서 내용에 대한 오해 및 자의적 판단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품목분류가 이루어졌습니다. 품목번호는 수입신고 시 관세율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 물품 수입 후 실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품목번호를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학습과 수입물품 및 해당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품목분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논리로 푸는 HS 사례

# EMI Filter의 품목분류 변경고시

## 1. 개요

EMI란 전자파 장애, 신호에 대한 노이즈 등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기기로부터 주로 발생하는 EMI를 걸러내기 위하여 인덕터와 축전기 등의 리액턴스 소자를 이용해 불필요한 전자파 등은 감쇄하고 필요한 신호 성분만 통과시키는 필터를 EMI Filter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EMI Filter는 전기적인 노이즈를 제거하고 단말 기기에 정상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여러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상용전원으로부터의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22.11.08부터 시행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사항에서는 EMI Filter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 고시하여, EMI Filter를 취급하는 수출입자분들께서는 변경된 품목분류대로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홍정화

관세사

jhhong@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검역/요건
- 품목분류
- 관세환급

## 2. EMI Filter의 품목분류의 결정

### 1) 변경고시 전 품목분류 (제8548.90-9000호)

○ 물품 설명: 전자기기의 전원 입력단에 설치되며 기기에서 방출되어 전원선을 통해 빠져나가는 불요전자파를 차단, 흡수, 접지시키며 외부의 NOISE가 AC LINE에 전도되어 세탁기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

○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16부 주2 다목은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48호에는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에 열거한 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기류의 모든 전기식 부분품을 포함한다. (a) 특정의 기기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b) 이 류의 앞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이나 제16부의 주 제1호에 의하여 제외하는 물품. 따라서 이 호에는 특정한 기계류의 부분품으로서가 아닌 기계류의 전기식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물품과 전기적인 접속자·절연부분·코일·접속자나 그 밖의 특정한 전기소자를 갖춘 물품이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Capacitor와 Inductor의 특성을 이용하여 불요전자파를 필터링하는 물품으로, 제85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전기식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8.90-9000호에 분류함

### 2) 변경고시 후 품목분류 (제8543.70-9000호)

○ 변경사유: 전원공급이나 변환기능과는 별개로 특정 주파수를 걸러주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8543.70-9090호로 분류(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물품 설명: 파워 서플라이(변환기) 입력 단에 연결되어 상용전원은 통과시키고 불필요한 고주파(150kHz 이상) 전류는 감쇄시키는 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필터
  
- 분류 근거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크(choke)·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전기적 효과(전류의 변화에 저항하는 리액턴스)에 의해 작동하는 인덕터(제8504호)와 캐패시터(제8532호), 전기단자(제8536호) 등으로 구성된 조립품이므로, 제85류에 분류됨에는 이견이 없음
  
  - 다만, 관세율표상 불필요한 주파수 등을 걸러주는 기능의 물품(EMI 필터)이 제85류에 특별히 계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8543호의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함이 타당함
  
  - 본건 물품이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고유한 기능은 제8479호 해설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 제8479호 해설서에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s)”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잡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로, (i)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잡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ii)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나 복잡한 기계의 조작성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하는 장치인 '파워 서플라이(제8504호)'에 결합되어, "변환"의 기능 수행과는 별개로 특정 주파수를 제거(감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변환"의 기능수행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으므로, 제8543호의 고유한 기능(individual functions)을 가진 전자기기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3. 적용일 및 유의사항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은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Global Customs Insight*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이전가격에 대한 OECD 지침 소개 - 2 코로나-19 특정비용의 할당과 손실

20년 2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는 전세계를 강타하여, 우리가 가졌던 상식과 생활방식은 물론 무역 및 관세분야 또한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37개 회원국의 합의된 견해를 수렴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전가격지침 (2020.12)'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이슈에 대한 OECD 이전가격 지침의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및 적용,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에 대해 관련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다국적 기업 및 세무당국을 위한 2017년 OECD 이전가격 지침(OECD TPG)은 적용되어야 하며, 1) 비교가능성 분석(comparability analysis), 2) 코로나-19 특정비용의 할당과 손실 (losses and the allocation of COVID-19 specific costs), 3) 정부지원 프로그램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s), 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advance pricing agreements, "APA")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황 별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이며,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 특정비용의 할당과 손실 (losses and the allocation of COVID-19 specific costs)**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차 미 정**  
 팀장/관세사  
 mjcha@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요건
- 통관 법률 자문

코로나-19 하에서 발생한 특정비용의 할당과 손실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다음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당기손익 배분 영향

약정에 대한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은 거래가격을 통해 거래로 인한 당기손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업적 관계나 재무적 관계에서 위험 분석에 대한 기존 지침은 특수관계자 간에 손실이 배분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특히 목적에 적합할 것입니다.

2) 예외 비용 할당 방법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예외적이고 비 반복적인 운영 비용을 관련 당사자들 간에 할당해야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비교 가능한 운영상황에서, 독립적인 기업의 평가에 근거하여 비용을 할당하여야 합니다. 별개로 임시비용은 영업비용 및 영업외항목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비교가능성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이전가격 분석의 '예외적인', '비 반복적인' 임시' 비용은 구분되어야 하며, 비교가능한 방법 대해 기업 간 거래의 위험분석, 독립 기업이 그러한 비용을 정상가격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관련 기업 간의 거래에서 부과되는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무회계기준은 비용의 성격을 식별하는 데 목적 적합하고 잠재적으로 유용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교가능성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무회계 개념 하에서도 특정 원가가 예외적이거나 예외적인 원가로 적절하게 특성화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운영 또는 예외적인 비용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기 및 영구적인 변화의 상황에서 예외적이거나 비 반복적인 운영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코로나-19 팬데믹 보다 이전에 발생한 전형적인 특정한 비용의 감소 또는 제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3) 불가항력 조항

코로나-19 팬데믹은 관련 당사자들이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거나, 회사 간 계약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조

건을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경제환경에서 관계당사자들 사이에 코로나-19이 특별비용 및 손실의 할당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 됩니다. 코로나-19는 독립된 당사자들이 기존의 계약에서 어떠한 조건을 다시 협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독립된 당사자가 그들의 계약의무를 엄격하게 유지하지 않아도, 특히 양 당사자가 계약의 재협상으로 인한 이익이 있거나, 그들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관점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뜻하며, 이러한 변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사자에게 잠재적으로 발생할 이익을 고려할 때 필요합니다.

\*출처: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 OECD 2020

관세사 차미정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른 WTO 양허관세

## 1. WTO 정보기술협정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WTO 정보기술협정(ITA)은 1996년 복수의 WTO 회원국들이 IT 분야 203개의 품목에 대해 관세의 철폐를 약속한 분야별 자유화 협정입니다. 1996년 타결 이후 전 세계 IT 수출이 3배 성장하였고 현재는 전 세계 IT품목 무역의 96% 이상을 ITA 회원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ITA는 IT 제품의 교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경제 전반을 활성화함으로써 세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 정 호

관세사

jhahn@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FTA 컨설팅

## 2. ITA에 따른 관세양허

ITA는 WTO 회원국들 간의 자유로운 분야별 협상결과로 타결되었습니다. ITA 회원국은 ITA 합의문에 따라 양허표를 수정하였고 ITA에서 규정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습니다. ITA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WTO협상과 달리 일부 회원국만이 참여하는 협상이지만 합의 결과에 따라 양허표상 해당 품목에 대한 MFN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전 세계 IT상품의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양허표 (이하, WTO협정관세 양허표) 상에 ITA협정에 따라 양허한 품목의 양허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정보통신기기”의 범주

WTO협정관세 양허표를 보면 ITA협정에 따라 관세가 철폐된 품목 중 일부 품목은 “자동자료처리기계(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에만 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통관실무 과정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은 HS 코드가 기재되어 있어 이견이 발생하지 않지만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의 경우 수입하려는 물품이 해당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해 종종 이견이 발생합니다.

아래의 양허표를 보면 배터리충전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은 8504.40-3010호로 분류되고 0%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외 배터리 충전기는 8504.40-3090호로 분류되며 1.6%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산품·수산물및단순양허한농림축산물에대한양허관세(제2조관련)」				
품목번호			품명	세율(%)
				2022년
8504	40	30	배터리 충전기	
8504	40	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0
8504	40	3090	기타	1.6

“전기통신용 기기”는 영문으로 “Telecommunication Apparatus”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서는 이를 “유선·무선·광선 또는 기타 전자기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유무선 통신 기술을 통해 부호, 영상 등의 Data를 송수신하는 기기를 의미합니다.

ITA협정에 따라 양허표에서 HS. 8504.40-3010호 “Battery chargers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and telecommunication apparatus”에 대하여 관세율을 0%로 양허하고 있습니다.

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 기기(Telecommunication Apparatus)의 것”이며, Data를 송수신하는 기기가 아닌 그 외 전기기기 또는 가정용전기기기의 것에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의 범주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예시의 배터리 충전기가 특정 정보통신용 기기 전용의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물품을 8504.40-3010호의 물품으로 인정하며, 특정기기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기기에도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8504.40-3090호의 물품으로 봅니다.

#### 4. 관세청 품목분류 사례(배터리 충전기)

아래의 품목분류 사례를 보면 관세청은 고속충전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충전기는 고속충전이 가능한 특정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전용되는 물품이므로 8504.40-3010호로 분류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속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충전기의 경우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용 기기 이외에도 같은 충전단자 규격을 사용하는 보조배터리나 휴대용 가습기 등에도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8504.40-3090호에 분류하였습니다.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01	품목분류3과-19682
결정세번	8504.40-3010	8504.40-3090
품명	HIGH SPEED CHARGER; SPE-N8PD1P18	BATTERY CHARGER ; SPE-N8TU2P210Y(8P) ;
물품설명	<p>- PD(Power Delivery)3.0 충전 포트 1개가 장착되어 급속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로 특정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에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압 및 전류를 변화시켜주는 기기(본체만 제시됨)</p> <p>- <u>특정 모델의 스마트폰에 연결되면 제품 내부에 장착된 고속충전 제어 집적회로(IC)가 이를 인식하여 고속 충전을 실행</u></p> <p>- 220V 교류 전원을 입력받아 직류 전원으로 정류 후 최대 18W의 충전 전력을 연결된 기기에 공급</p> <p>- 사양          · Input : AC 220V, 50~60Hz, 0.25A          · Output : 5V, 3A or 9V, 2A or 12V / 1,5A</p>	<p>- USB 충전 포트 2개가 있는 충전기 본체와 충전용 케이블이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됨</p> <p>- 220V 교류 전원을 입력받아 5V 직류 전원으로 정류 후 <u>연결된 다양한 기기에 최대 2.1A의 충전 전류를 공급하며, 급속 충전 기능은 포함되지 않음</u></p>
결정사유	<p>-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며,</p> <p>- 같은 호 해설서 '(II) 정지형 변환기'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 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변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p>	<p>-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p> <p>- 같은 호 해설에서 '(II)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를 결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p> <p>- "(2) 전기공급용 변환기 :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를 예시하고 있음</p>

결정사유	<p>있으며, · 그 예시로 “(2) 전기공급용 변환기 :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를 설명하고 있음</p> <p>- 본 품은 급속충전 전용 집적회로(IC)를 내장하고 있어, <u>급속충전이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과 태블릿·노트북 등을 인식하여 해당 기기에 고속충전을 지원</u>하는 제품임</p> <p>- 따라서 <u>본 물품을 배터리 충전기로서 “자동차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u>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u>제 8504.40-3010호에 분류함</u></p>	<p>- 본 물품은 배터리 전원을 입력받아 5V 직류 전원으로 정류 후 <u>연결된 다양한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여 충전</u>하는 제품임</p> <p>- 따라서 <u>본 물품은 배터리 충전기로서 자동차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 아닌 ‘기타’의 것으로 보아</u>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u>제8504.40-3090호에 분류함</u></p>
------	--	--

### 5. 주의사항

수입통관 단계에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추후 관세추징 등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으므로 통관 시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에 적용되는 0% 관세율은 수입 후 해당 물품의 용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용도세율인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용도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통관 시에는 용도세율 적용 신청이 필요하며 통관 후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수입물품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순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김 태 경

관세사

tkkim@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및 조사
- 외국환거래 자문
- 무역거래 자문

## 2. 주요 개정내용

별표 2의2 제1호가목(6) 중 "장치"를 "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5) 중 "원·부자재"를 "원자재·부자재"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고셔병환자"를 "고쉐병환자"로 하고, 같은 목 (2) 중 "부신이영양증환자"를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로 하며, 같은 목 (5) 및 (6) 중 "심신장애자가"를 각각 "심신장애인이"로 하고, 같은 목 (8) 중 "림파구증식증"을 "림프구증식증"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1) 중 "차입벨"을 "차임벨"로 개정하였습니다.

## 3.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

위 개정 내용 중에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된 부분에 주목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UN의 권고로 장애인에 관한 법 '심신장애자복지법(1981)'을 제정하였고, 이 때 '장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장애자'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장해자'를 한국식으로 표기하여 쓴 것인데 이러한 '놈 자(耨)'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1987)'으로 개정되며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용어도 '장애인'으로 바뀌어서, 관세법을 비롯한 많은 법령에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아직도 '장애자' 표현이 남아있어 이번에 '장애인'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법적 용어가 변경되어도 다른 법령에 해당 용어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물론 시민의 건의를 통해 법적 용어가 통일시켜야 할 것입니다.

## 4. 시행일자

2022년 9월 6일 시행

#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